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-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을 높은 수준으로 초과달성하여 목표액을 현 추이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
-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,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기금계좌로 전입 필요

2. 주요내용

-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변경
 - 목표액: 150,000천원 → 270,000천원
 - 고향사랑기부금 전입금 처리
 -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: 167,260,700원
- ※ 2023년 8. 21일 기준 일반회계 수입액

3. 관련근거
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
-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6조

4. 의결요청안: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I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「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제5조(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), 제6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
-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II 운용상황 및 변경사유

운용상황

-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수립: 2022. 12. 22.
-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의: 2023. 4. 13.
-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승인(군의회): 2023. 7. 21.

변경사유

-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이 당초 목표액을 높은 수준으로 초과 달성하여 목표액을 현 추이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

▷ 2023년도 목표액 변경: 150,000천원 ⇒ 270,000천원

-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지연으로 인해, 기금계좌가 아닌 일반회계 세외수입계정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기금계좌로 전입 필요

▷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: 167,260,700원

※ 2023. 8. 21일 기준 일반회계 수입액

Ⅲ 변경안 세부내용

○ 기금조성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구분	22년도말 조성액①	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3년도말 조성액 ③=②+④	비 고
			수입②	지출③	증감 ④=②-③		
고향 사랑기금	당초	0	151,350	0	151,350	151,350	
	변경	0	271,350	0	271,350	271,350	
	증감	0	120,000	0	120,000	120,000	

○ 수입계획(세입)

(단위: 천원)

장·관·항·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산출내역
200 세외수입	104,090	151,350	△47,260	
210 경상적세외수입	1,350	1,350	0	
216 이자수입	1,350	1,350	0	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1,350	1,350	0	
220 임시적세외수입	102,740	150,000	△47,260	
224 기타수입	102,740	150,000	△47,260	
224-03 기부금수입	102,740	150,000	△47,260	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		
720 내부거래	167,260	0	167,260	
721 전입금	167,260	0	167,260	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167,260	0	167,260	
수입합계	271,350	151,350	120,000	

